

## 국토부, 자동차 소프트웨어 위반사례 수사의회

- 국토교통부(장관 김운덕)는 자동차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하는 위반사례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회를 하였다고 밝혔다.
- 지난 3월 31일 국토교통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미치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는 불법임을 알린 후 지속적으로 불법행위 발생여부를 모니터링해왔다.
  - 자동차제작사는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CSMS)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 자동차사용자가 임의로 소프트웨어를 변경하는 경우 해당 차량을 즉시 원격으로 비활성화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소프트웨어 임의 변경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경찰청은 자동차제작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수사를 개시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가 커넥티드카, SDV로 전환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자동차 소프트웨어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있다면서, 「자동차관리법」 제35조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주는 소프트웨어 임의 변경은 엄격히 제한됨을 재차 강조하였다.

담당 부서	모빌리티자동차국 자율주행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임월시 (044-201-3847)
		담당자	사무관	임채현 (044-201-4146)